

FKI Tower 컨퍼런스센터 임대차 계약 약관 및 이용규정

제 1 조. 계약의 목적

임대인은 본 계약기간 동안 회의실을 임차인에게 임대하며, 임차인은 이에 대하여 해당 행사의 목적으로 사용하고 임대료를 임대인에게 지급할 것을 약속한다.

제 2 조. 계약의 성립

본 계약은 임차인의 사용신청(홈페이지 이용), 계약약관 동의와 임대인의 사용승인으로 성립된다. 임차인은 임대인이 요청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임대인은 하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임차인에게 임대를 승낙하지 아니한다.

가. 정치성의 행사 (당원교육, 선거관련집회, 단식투쟁, 혈서작성 성격의 집회, 기타 등)

나. 회의장 파손, 타 이용자의 불편, 주변 분위기 문란의 우려가 있는 집회

예시) 종교집회, 고성 또는 기물 파손 등의 우려가 있는 집회, 악기를 동원한 집회

알코올이 함유된 음료(샴페인, 맥주 포함)가 동반되는 회의 등

다. 외부인을 상대로 미풍양속을 해치는 영업을 겸한 집회

라. 회의실 사용(임대)계약을 만성적으로 위반하는 업체, 회의실 임대료를 미불한 업체 등

예시) 회의장 예약 후 예약금을 상습적으로 미납하는 행위, 임대료 결제 수단을 수시로 변경하는 행위 등

마. 기타 회의장 운영 및 관리를 저해하거나, 회의실을 사용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행사

제 3 조. 임대료의 납입 및 환불

3.1. 임차인은 회의장 사용을 위해 예약 접수일로부터 5 영업일 내 정해진 예약금을 지정 계좌로 현금 납입하여야 한다. (입금계좌 : 068-13-00109-6(KEB하나), 예금주 : 전국경제인연합회)

3.2 임차인은 회의장 사용일 전 5영업일까지 임대료 전액을 지정 계좌로 현금 납입하여야 하며, 임차인의 사유 등으로 부득이하게 현금 납입이 불가 할 경우, 임차인과 상호 협의하여 납입

방법을 조정할 수 있다.

- 3.3 회의장 예약금이 제3조 1항의 기간 내 미 입금 시 예약된 행사는 취소되며, 같은 사유로 3회 취소 시 해당 임차인은 사용이 제한된다.
- 3.4 회의장 임대료 납부 후, 취소 및 수정 요청은 불가하다.
- 3.5 회의장 사용이 정상적으로 완료되면, 임대인은 기납부한 예약금을 회의장 사용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예약금을 입금한 업체(예약자) 명의의 계좌로 반환한다.
- 3.6 임대인은 불가항력 또는 국가시책 변경에 의해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임대료 반환 이외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 4 조. 회의장 운영, 사용의 변경 및 취소

- 4.1 회의장 운영시간은 평일은 09시~22시, 주말은(토, 일, 법정공휴일 포함) 09시~18시이다. 회의장 운영손익에 근거하여 오전(09시~12시), 오후(13시~18시), 종일(09시~18시), 야간(19시~22시)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이외 사용은 불가하다. 단, 조찬, 오찬, 만찬행사는 임대인과 협의하여 사용할 수 있다.
- 4.2 임차인 사정에 의한 회의장 내용(책상 및 의자 배치)의 변경은 임대개시 1일 전(D-1일)까지만 가능하며, 이후의 변경은 불가하다.
- 4.3 임차인이 예약금 납부 후 예약을 취소할 경우 기 납부된 예약금은 취소 위약별로 반환되지 않는다. 단, 예약금을 미입금하고 전체 임대료를 선 지불한 예약에 대해서는 임대료 전체를 위약별로 반환되지 않는다.
- 4.4 임차인은 예약금 납부 후 사용일을 변경할 수 없다. 단 사용일로부터 30일 이전까지 1회에 한하여 위약별 없이 사용일 변경이 가능하다. 이 경우 기존 예약보다 큰 회의장으로 변경 시 추가 예약금을 납입해야 한다.
- 4.5 회의장 이용의 원활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임차인은 회의시작 30분 전 입실이 가능하며, 견적서에 명시한 시간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시간 초과시, 회의장 관리인은 임차인에게 퇴실 요청을 할 수 있으며, 불이행 시 추가 요금을 부과할 수 있다. (10분 초과 사용시

1시간 이용료 부과)

4.6 회의장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임차인은 회의실 부대 시설물(케이터링, 광고 배너, 간이 창구 등)의 이용 및 설치를 원할 경우, 사전에 반드시 관리인과 협의를 거쳐야 하며 사용시 현장 관리인(보안 요원 포함)의 지시를 무조건 따라야 한다. 상기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관리인 임의로 해당 자재를 조치 및 철거가 가능하다. 임차인은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철거와 관련된 비용 일절을 부담한다.

4.7 기자재(텔레게이션, 빔 프로젝터 등) 사용은 회의실 임대료와 별도로 개별 요금이 부과된다.

4.8 임대인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임차인의 예약을 취소할 수 있다.

가. 사용신청서의 기재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

나. 제2조의 각 호에 해당함이 판명된 경우

다. 본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경우

4.9. 상기 조항에 의거 예약이 취소된 경우 임차인은 납입한 임대료를 청구할 수 없으며, 귀책 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반환 받을 수 없다.

제 5 조. 계약의 해제 및 사용중지

5.1. 임대인은 계약체결 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가. 임차인이 계약체결 후 기일까지 예약금 및 임대료를 납입하지 않은 경우

나. 임차인이 사용일정 및 장소를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는 경우

다. 임차인이 행사내용을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는 경우

라. 임차인이 법령위반, 반사회 반질서적 행사, 시설파손 우려가 있는 행사 등 회의실 운영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행사를 진행하는 경우

마. 임차인이 회의장 사용권을 양도 또는 전대하는 경우

바. 임차인이 기타 계약 또는 이용규정을 위반한 경우

5.2. 계약이 해제된 경우 임차인은 즉각 회의실 사용을 중지하여야 하고 제7조에 의거하여 원상 복구 의무를 부담한다.

5.3. 상기 조항에 의거하여 계약해제 또는 사용중지 된 경우 임차인은 납입한 예약금 및 임대료를 청구할 수 없으며, 귀책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반환 받을 수 없다.

제 6 조. 목적물의 사용 및 금지사항

6.1. 임차인은 임대장소 및 시설, 부대서비스를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임대인의 운영규정을 준수하고 행사 참석자 및 관람자 등도 이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6.2. 임차인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임대인은 제5조에 의거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가. 통로, 기타 공용시설에 간판, 광고물의 설치, 게시, 부착 또는 각종 기기의 방치 행위

나. 폭발물, 위험성 있는 물체 또는 인체에 유해하고 불쾌감을 주거나 우려가 있는 물품 반입 및 보관 행위

다. 미풍양속을 해치는 영업 및 판매 행위

라. 승인 외 시설 사용 행위

제 7 조. 원상복구

7.1. 임차인은 사용이 끝나는 즉시 사용한 회의실의 각종 설비와 제공된 장비·비품을 임대인의 확인을 받아 반납하여야 하며, 사용 중 발생한 파손 및 훼손은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7.2. 임차인이 원상복구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임대인은 원상복구를 대행하며, 실 소요경비 및 원상복구 지체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배상책임을 지고, 이 배상비용을 작업 14일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 8 조. 불가항력

천재지변, 재앙, 국가시책변경 및 기타 불가항력적 원인에 의해 사용자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 임대인은 그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 9 조. 임대료 및 부대서비스 비용 등의 변경

임차인은 임대인과 계약 시, 회의실의 임대료 및 부대서비스 비용이 임대인의 요율에 따라 금액이 결정되었음을 이해하고, 조세공과금의 증감, 경제정세의 변동, 물가상승, 기타 임대인의 사정에 의하여 요율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된 임대료 및 부대서비스 요율에 따라 임대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임대인은 변경요율을 적용할 경우 임차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 10 조. 용어해석

10.1. 본 약관 및 규정의 내용 중 용어해석의 이의가 있을 시는 임대인의 해석에 따른다.

10.2. 본 약관 및 규정에 명시된 사항 외의 문제 발생 시, 임대인의 합리적인 결정에 따른다.

제 11 조. 준거법 및 분쟁

11.1. 본 계약의 법률적용은 대한민국 법에 따른다.

11.2. 본 계약에 관련하여 당사자간 발생하는 일체의 분쟁에 관하여는 서울 중앙지방법원의 판결에 따라 해결하도록 한다. 당해 판결은 최종적이며 당사자간 구속력을 가진다.